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

1. 관련: 중앙방역대책본부-19420(2021.9.16.), 19514(2021.9.19.)
2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변이바이러스 발생 양상의 변화 등 방역상황을 반영하여 「**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**」 제3판을 개정해 와 안내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주요 개정 사항>

○ 밀접접촉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

- 선행확진자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따른 접촉자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삭제
- PCR 검사 횟수 확대(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1회 추가)
- 고위험집단시설 관련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신설
(확진자 발생 고위험집단시설 입소자, 이용자, 종사자의 경우 격리 적용)
※ 고위험집단시설 외 확진자의 경우 위험도 평가에 따라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가능

○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

- 변이유행여부 외 해당국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격리면제 적용제외국가 설정 가능하도록 개념 조정('변이유행국가' → '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')
* 기존 변이바이러스 유행국 선정 대상 중 국내외 우세종인 델타 변이는 제외('21.10월부터)
-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동반 6세미만 영유아 격리면제 적용('21.9.17일부 기 시행중)
*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4406(2021.9.17.) 국내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관련 조치 안내

※ 시행일: 9.24.(금) 시행

- 붙임 1. [방대본공문]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
2.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전후비교표
3.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_제3판
4. (참고)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(10월) 선정 안내. 끝.

교 육 부 장 관



수신자 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김신혜

서기관

정화권

학생건강정책과장

전결 2021. 9. 24.

조명연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8120

(2021. 9. 24.)

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14동 교육부 (어진동)

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814

팩스번호 044-203-6438

/ shin8352@korea.kr

/ 비공개(5)